대한민국 여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군]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육 · 해 · 공군 · 간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면 사관학교, 학군사관 · 학사사관 또는 민간부사관, 기술계열 부사관, 부사관 후보생 등에 지원해야 합니다.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이며,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대한민국 여군 1
1. 여군 지원준비 4
1.1. 여군의 이해 4
1.1.1. 여군지원 및 배치 4
1.1.2. 계급 및 병과소개 5
2. 여군 지원 9
2.1. 부사관 지원자격 9
2.1.1. 육·해·공군 부사관 9
2.2. 준사관 지원자격 12
2.2.1. 준사관 12
2.3. 장교 지원자격 13
2.3.1. 육·해·공군 및 간호 장교 13
3. 여군 복무 17
3.1. 복무기간 등 17
3.1.1. 복무기간 17
3.1.2. 복무기간 종료 19
3.2. 진급·휴가·휴직 등 21
3.2.1. 진급 및 봉급 21
3.2.2. 휴가 26
3.2.3. 휴직 31
3.3. 준수·징계사항 33
3.3.1. 준수사항 33
3.3.2. 징계사항 36
3.4. 고충사항 등 해결하기 40
3.4.1. 고충처리 40
3.4.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41
3.5. 복지혜택 44
3.5.1. 군 숙소 등 44
3.5.2. 건강검진 45
3.5.3. 교육 및 보육 지원 46

1. 여군 지원준비

1.1. 여군의 이해

1.1.1. 여군지원 및 배치

여군지원 및 제한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부정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9조의2제1항).

▪ 군인 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것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9조의3제1항).

여군배치 및 제한

여군 배치

▪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1항).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

1.1.2. 계급 및 병과소개

여군계급

여군 장교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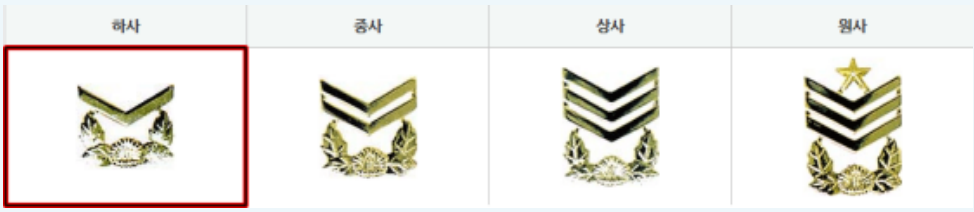
▪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입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 다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관됩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7호의2).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8호).

-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에 임용된 사람
  - √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군 부사관 계급



▪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단서).

▪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제1호).

육군 병과소개

육군병과

▪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 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특수병과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육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 사이트(www.arm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 병과소개

해군병과

▪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 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해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 사이트(www.nav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군 병과소개

공군병과

▪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구 분	내 용
기본병과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미사일방어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공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 사이트(https://rokaf.airforc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군 지원

2.1. 부사관 지원자격

2.1.1. 육·해·공군 부사관

육·해·공군 부사관 지원

지원 군	지원 분야	지원 자격

육군	민간부사관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BMI등급 2급 이상
	전문의무부사관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임관일을 기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임관일 기준 고교 졸업 가능자 포함),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급(신장·BMI): 2급 이상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3년 이내 전역한 예비역 장교(중위·대위), 중사로서 재임용 후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사람 √전역할 때 계급·병과(세부특기)와 재임용 계급·병과 세부특기가 일치하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급(신장·체중): 2급 이상
	특전부사관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고등학교 졸업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 √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하는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체격종합등위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해군	기술계열 부사관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 이상 √ 모집계열 관련 학과(고교, 대학·전문대) 전공자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군악부사관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다만, 임신 중인 사람은 제외함)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 √연주경력 2년 이상으로 목관, 금관, 타악기, 밴드, 성악 등의 특기를 소유한 사람

공군	부사관 후보생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
	학군부사관 후보생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신장·체중): 2급 이상 /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 3급 이상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 나이: 만 15세 이상 만 17세 이하(입학일 기준)인 사람 √ 학력: 중학교 졸업예정인 사람(졸업한 사람 포함) 또는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 부사관 모집선발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군 모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군 부사관 모집: 육군모집 사이트(www.goarmy.mil.kr)

√ 해군 부사관 모집: 해군모집 사이트(www.navy.mil.kr/enlist/main.jsp)

√ 공군 부사관 모집: 공군모집 사이트(https://rokaf.airforce.mil.kr)

2.2. 준사관 지원자격

2.2.1. 준사관

준사관 지원

지원분야	지원자격
항공운항 준사관	√ 나이: 만 50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현역부사관은 입교일 기준(학군교육 양성교육) 2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민간인 등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 √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
방공통제 준사관	√ 나이: 만 32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방공통제분야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장교: 임관일 기준 전역 2년 이내인 사람 또는 임관일 이전 전역예정인 사람 ※ 부사관: 현역 중 장기복무자 또는 임관일 기준 전역 2년 이내인 사람
통·번역 준사관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학력: 부사관은 전역일자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언어 능력 및 신체등급: 해당 기간의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준사관 모집선발계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군 모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군 준사관 모집: 육군모집 사이트(http://www.goarmy.mil.kr)

√ 해군 준사관 모집: 해군모집 사이트(https://www.navy.mil.kr/enlist/main.jsp)

√ 공군 준사관 모집: 공군모집 사이트(https://rokaf.airforce.mil.kr)

2.3. 장교 지원자격

2.3.1. 육·해·공군 및 간호 장교

육·해·공군 및 간호 장교 지원

지원 군	지원 분야	입학·지원 자격
	육군	√ 나이: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육군	사관학교	√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3급인 경우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격·불합격을 결정함)
	3사관 학교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4년제 대학은 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 2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 3년제 전문대는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
	학군사관(ROTC)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4년제 학과 2학년(5년제 학과 3학년) √ 그 밖에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공지사항 확인
	학사사관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 √ 학력: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신체등위 합격기준: 3급 이상 √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합격기준: 2급 이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일반학과 대학]** **√ 나이: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학력: 수업연한 4년 이상인 국내대학(산업대, 교육대 및 원격대학 포함)** **[군의·치의·수의학과 대학]**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의학·치의·수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해군	해군 사관학교	√ 나이: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등
	사관후보생	√ 나이: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임신 중인 사람 제외) √ 학력: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 이상
	학군사관후보생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 √ 학력: 한국해양대,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및 제주대학교의 재학 중인 1학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사람 √ 학력: 수업연한 4년제 이상인 대학 1, 2, 3학년 재학생(다만, 군의는 전학년) √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 이상

공군	공군 사관학교	√ 나이: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학군사관 후보생	√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사령부 27예비단(055-750-2612)로 문의
	학사사관 후보생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 이상
	지정모집대학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지원하는 1학년인 사람
간호	간호사관	√ 나이: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장교 모집선발계획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각군 모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군 장교 모집: 육군모집 사이트(https://www.goarmy.mil.kr:447)

√ 해군 장교 모집: 해군모집 사이트(https://www.navy.mil.kr)

√ 공군 장교 모집: 공군모집 사이트(https://rokaf.airforce.mil.kr)

√ 간호 장교 모집: 국군간호사관학교 사이트(www.kafna.ac.kr/)

3. 여군 복무

3.1. 복무기간 등

3.1.1.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장교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근속·계급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근속·계급 정년

▪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근속·계급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구 분	계 급	정년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15년
	중위	15년
	소위	15년
	준위	32년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복무기간 산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기간
- 구류기간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채용된 경우의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제1호 및 제48조제3항제1호).

3.1.2. 복무기간 종료

전역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단서).

본인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전역심사위원회

전역과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군 본부 또는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둡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적 및 퇴역

제적

▪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 사망하였을 때
-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파면되었을 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결의가 있을 때
-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다음의 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구분	내용
포로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행방불명자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포로 및 행방불명자란?

·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 행방불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에 따라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그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퇴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3.2. 진급·휴가·휴직 등

3.2.1. 진급 및 봉급

진급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2년 이내에 전역할 사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쳐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사관학교과정
- 육군 3사관학교과정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 사관후보생과정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부사관 진급

▪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장이 합니다(「군인사법」 제25조제5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

▪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이란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임자의 순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단서).

> **Q.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
> A.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 선발시험 성적(필기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 신체조건
- 학력 및 경력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위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참모총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장교 진급

▪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경력
  - √ 경험한 직책
  - √ 군사교육
  - √ 군사적 전문기능
  - √ 진급기록
- 복무성과
  - √ 근무성적 평정기록
  - √ 군사교육성적
  - √ 상벌사항
- 그 밖의 사항
  - √ 품격
  - √ 신체조건
  -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1항).

진급 발령 보류

▪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하며, 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 위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위 1.의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 위 3.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 위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역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 위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위 1.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②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 위 3.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명예진급

명예진급 대상

▪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전역하는 경우 명예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 명예진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연금 및 명예전역수당

▪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봉급 등

봉급 및 호봉

▪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라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의 호봉 책정을 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초임 호봉 부여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및 별표 27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장교·준사관·부사관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함)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3.2.2. 휴가

휴가의 종류

연가 등

▪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 다음의 기간은 위에 따른 연가일수 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 전직지원교육기간

▪ 공무상의 사유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상 군인에 대하여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군인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 하사 이상의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 이 경우 외출은 1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외출 누적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공가

▪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공소청·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함)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단서).

청원휴가

▪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함):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한 때에는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군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후단).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후단).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1호).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9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 위의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함)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본문).

※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군인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 위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단서).

▪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를 입은 군인에게 5일(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특별휴가

▪ 지휘관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지휘관은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단서).

▪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역 전 휴가(轉役前休暇)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휴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

휴가의 시행 및 제한

휴가의 시행

▪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이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3.2.3. 휴직

휴직

휴직처분 및 휴직기간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

-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행방불명되었을 때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2항).

※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군인사법」 적용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5항).

▪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제54조의5).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단기복무 중인 여군을 포함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명해야 함)

※ 위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6항).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내용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휴직기간

▪ 다음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않으면 전역됩니다)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2항 단서).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3항·제4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채용기간 동안

▹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2년 이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이내. 다만,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및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에 따른 휴직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단서 및 제48조제3항제1호·제4호).

3.3. 준수·징계사항

3.3.1. 준수사항

근무태만 및 군무이탈 금지

근무태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5조).

▹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무단이탈 및 군무이탈 금지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79조).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위의 형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명령 불복종 금지

복종 및 실행

-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항명금지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47조).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4조).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5조).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 등 금지

폭행 및 협박 금지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8조).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0조).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1항).
  -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2항).

-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2조제1항).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군형법」 제49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군형법」 제52조제2항).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욕 금지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1항).
-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2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3항).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4조제4항).

군용물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군용시설 등 방화 금지

-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6조제1항).
-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66조제2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불을 놓아 쌓아둔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67조).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용시설 등 손괴 금지

-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69조).

정치 관여 금지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등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4조제1항).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군인(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3.3.2. 징계사항

징계사유 및 종류

징계사유

-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3조).

구 분	종 류	내 용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파 면	제40조 및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해 임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57조제1항) ·3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중징계	강 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및 전역일자 연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호봉승급 지연 18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12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근 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견 책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호가목).

3.4. 고충사항 등 해결하기

3.4.1. 고충처리

고충 처리

고충 심사 청구절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 위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고충 심사 절차

▪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고충 심사 결정

▪ 고충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고충 심사 결과처리

▪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하며,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재심청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항).

3.4.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예방교육

▪ "성인지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

▪ 성인지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1조).

교육결과 반영

▪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부사관의 '성과상여금'을 심의할 때 평가항목으로 반영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3조제1항).

▪ 전년도 성인지교육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은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사유로 교육 미이수된 인원은 추가 성인지교육(사이버교육) 실시 후, 해당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3조제2항 본문).

※ 다만, 세부 적용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3조제2항 단서).

▪ 각 군(양성평등센터)은 전년도 성인지교육 미이수자의 당해연도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현황을 유지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관)에게 해당연도 말까지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3조제3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

피해자 치료

▪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해 다음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 임신 여부의 검사
  -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 성폭력피해에 따른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 성폭력피해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항).

피해자 보호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 위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다음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본문).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봉급의 50%

▪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1조제3항제9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가해자 처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2).

▪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3).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4).

▪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6).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7).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군형법」 제92조의8).

가해자 징계처리

▪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3항).

▪ 징계권자는 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3).

징계사유		처리기준		
		가중	기본	감경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성희롱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디지털 성범죄	성년 대상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아동·청소년 대상	파면	해임	강등~정직
	기타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강등	정직~감봉	감봉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기타 간부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1조제3항제9호).

> **Q. 여군인데 부대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성희롱한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A.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정직'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피해자가 여군 및 여군무원 등이므로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제3항·제1항 및 별표 3).

3.5. 복지혜택

3.5.1. 군 숙소 등

군 숙소 등 지원

군 숙소 지원

▪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만 제공)
  -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월차임

▪ 국가는 위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주택의 우선공급

▪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무주택기간
- 복무기간
- 부양가족 수
-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여부 등

3.5.2. 건강검진

건강검진 등 지원 받기

보건의료서비스

▪ 군인 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강검진 지원

▪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

-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필수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필수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필수검진 결과 군의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3.5.3.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 교육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 학자금 대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보육 지원

자녀 보육지원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탄력근무 신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

-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해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근무 유형선정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1항·제3항).

▪ 국방부, 직할부대 및 각 군은 동·하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유형을 정해 운영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2항).

탄력근무 통제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본문).

※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단서).

▪ 지휘관은 특정 시간대에 과다하게 탄력근무제가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탄력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1항).

▪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일의 탄력근무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출장의 경우는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단서).